

질병관리청 제1급감염병 등 24시간 유선 신고 접수 안내

「감염병예방법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의사 등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제1급감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에는 **즉시**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을 신고하여야 하며, **신고하기 전에**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, 전화 등의 방법으로 **알려야** 합니다.

질병관리청은 제1급감염병, 원인불명 감염병, 생물테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상황 접수할 수 있도록 **종합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**하고 있습니다.

질병관리청 1급감염병 등 신고 접수 창구: ☎043-719-7979(친구친구)

※ 일반인 상담은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)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(24시간 365일).

□ 제1급감염병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

- (메르스)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
①중동지역을 방문한 자, ②의심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,
③메르스 유행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한 자, ④중동지역에서 낙타 접촉력이 있는 자
- (바이러스성 출혈열) 증상 발현 21일 이내에 ①해당 질병 환자와 유증상기에
접촉한 자, ②해당 질병 위험지역 또는 유행 국가에서 의료기관 방문 또는
장례식 참석한 자, ③해당 질병 위험지역으로부터 온 동물을 실험·취급한 자
- (페스트) 증상 시작 10일 이내에 ①페스트 발생지역을 방문해 쥐벼룩에 물리거나
감염이 의심되는 동물과 접촉한 자, ②확진/의심 환자의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



질병관리청 24시간 365일
종합상황실

